
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2019. 7. 18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151
----------	--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7. 5. 강남구청장(총무과)
- 나. 상정의결
  -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(2019.7.18.)  
“수정가결”

## 2. 제안설명 요지(행정국장 : 신동명)

- 가. 제안이유
  -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.7.1.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,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함(안 제8조)
- 다. 참고사항
  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  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  - 합 의 : 사회복지과와 합의 되었음
  - 기 타
    - 신·구조문대비표(별첨)

- 입법예고(2019. 5. 3. ~ 5. 23.)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### **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**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으로 2019.7.1.부터 등급제가 폐지하는 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8조(지원내용)제1항 중 “장애등급” 을 “장애의정도” 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
- 안 부칙 중 “날로부터” 를 “날부터” 로 규정하는 것이 법령입안기준상 타당하다고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**

**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**

**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**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 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## 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제 151호

제안일자 : 2019.7.18.

제 안 자 : 행정재경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조례 부칙의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입안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

### 2. 수정주요내용

- 부칙 자구 수정(안 부칙)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중 “날로부터” 를 “날부터” 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<u>날로부터</u> 시행한다.	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<u>날부터</u>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7. 5.  
제출자 : 강남구청장  
제출부서 : 총무과

### 1. 제안이유

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.7.1.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, 업무혼란을 최소화 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함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사회복지과와 합의 되었음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 2019. 05. 03. ~ 2019. 05. 2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8조제1항 중 “장애등급”을 “장애의 정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지원 내용)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, <u>장애등급</u>,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8조(지원 내용) ① ----- ----- ----- <u>장애의 정도</u>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

[별지 제2호서식]
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2019.7.1.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에 해당

**3. 미첨부 사유**

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2019.7.1.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에 “장애등급”을 “장애의 정도”로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

**4. 작성자**

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진성용(02-3423-5174)